

#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 펀드명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항:

- (1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
- (2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 예정일: 2018년 12월 20일

□ 변경 내용: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		
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5px;"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style="width: 30%;">표준편차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투자위험등급</th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1.41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</td> </tr> </table>	표준편차	투자위험등급	11.41%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5px;"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style="width: 30%;">표준편차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투자위험등급</th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.34%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</td> </tr> </table>	표준편차	투자위험등급	<u>10.34%</u>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
표준편차	투자위험등급									
11.41%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									
표준편차	투자위험등급									
<u>10.34%</u>	3 등급 (다소 높은 위험)	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<b>공제제도</b>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  <b>분리과세한도</b>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 이 분리과세 적용	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<b>공제제도</b>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 - (신설) <b>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 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 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 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)</b>  <b>분리과세한도</b>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<b>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 과세 적용</b>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 하는 연금소득								

**트러스톤자산운용(주)**



**트러스톤자산운용**